

제 호

전통시장 인정서

1. 시 장 명:
2. 대표자 성명:
3. 소 재 지:
4. 시장 면적: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시장임을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